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4. 1. 24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4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: 2024년 1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시책추진 등 교육감 책무(안 제3조)
-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(안 제4조)
- 퇴직교직원센터 설치·운영 등(안 제5조)
-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사항(안 제6조)

-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항(안 제7조)
-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(안 제8조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정 이유

- 1970년대만 해도 평균수명이 60세 전후였지만 지금은 80세가 넘으며,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사는 시대임. 또 과거와는 다르게 퇴직자들의 정신 및 신체 나이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함
- 최근 교직원의 명예퇴직 증가로 저연차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, 학교 업무가 세분화·전문화 되면서 돌봄, 다문화 학생 한글 교육, 경계선 학생 학습 지도, 독서 지도 등 다양한 업무에서 퇴직교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음
- 이에 일하고자 하는 퇴직교직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,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재능기부로 미래세대 학생들 또는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됨

나.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

-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

있음을 명시하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한 규정이라 사료됨

- 안 제2조에는 퇴직교직원의 개념을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, 충청북도 소재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행정직, 교원 등 공무원과 사립 유치원·학교 교직원, 공무원직 등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
-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마련하게 하였고
- 안 제4조에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 내용에 학생교육 지원, 평생교육 지원,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원 뿐만 아니라 행정직, 공무원직 등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영역을 넓히고, 봉사한 분들을 위한 교통여비 등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됨
- 안 제5조에는 퇴직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학교 현장과 봉사하고자 하는 퇴직교직원들을 매칭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퇴직교직원 센터를 설치,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능 기부 등의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
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퇴직교직원 활용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규정하고,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
-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퇴직교직원의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 제정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교직원들이 평생 닦아온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 지원 등 교육활동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
- 현대 의학의 발달은 인간 수명을 120세까지 연장시켰고, 퇴직자들은 은퇴 후 늘어난 여유시간을 인생 이모작을 꿈꾸며 공부 하거나, 봉사 하거나, 일하려는 신중장년들도 많아져 최근 많은 지자체는 신중년, 중장년 인생이모작(일자리) 지원 조례를 제정^{2024년 1월 현재 80여곳} 하고 있음
- 이에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퇴직교직원들이 직장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사회(학교 등)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건강한

사회를 만들고 퇴직교직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며,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에 별다른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퇴직교직원 활동사업의 범위가 평생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주 대상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, 현직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퇴직교직원의 직무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. 또한 유사 교육과 관련한 상위법과 비교하여 결격사유, 자격, 범죄경력 조회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

-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

< 붙임 >

부산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사례

□ 목적

-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
- 단위학교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학생의 학습심리·정서 결손 해소

□ 주요내용

○ 운영 범위

-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대상

○ 방침

- 직접적으로 학생을 대면하여 학습·상담을 진행할 경우, 봉사자를 퇴직 교직원으로 한정
- 퇴직교직원 인력풀 관리 시스템으로 전 업무 프로세스 처리

○ 센터 역할

- 봉사자 매칭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
-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이 가능한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및 관리
- 퇴직교직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상호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

○ 2022년 주요 사업 실적

구분		내용
주요 사업		• 수요기관-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매칭 및 학교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(8개 사업) • 교육활동 지원 사업별 역량강화 연수 및 활동 평가회 실시
지원 형태		- 퇴직교직원 자원봉사자 위촉(근로관계 아님) • 교육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등의 실비 지원 가능 • 봉사시간 4시간 미만 : 1만원, 4시간 이상 2만원
현황	매칭	• 8개 사업, 161교에 196명 매칭, 10,598회(43,275시간) 교육활동 지원 ※ 수업대체 인력 배치: 인력풀 425명, 1,292건 매칭
	인력풀	• 704명 (초등: 254명, 중등: 412명, 특수: 2명, 일반직: 29명, 기타: 7명)
	연수	• 사업별 역량강화 연수 등 맞춤형 연수 기획 및 운영(32회)

□ 센터 운영

○ 인력 구성

- 센터장, 부센터장 (교육감 위촉, 1년 단위, 연임 가능, 봉사활동비 지급)
- 사업 담당 팀장 (센터장 위촉, 봉사활동비 지급)
- 교육청 직원: 1명 파견, 1주일 3일 근무 (화, 수, 금 근무 / 월, 목 교육청 근무)

○ 사무 공간: 교육청 직속기관 공유재산 활용 (1실)

○ 2023년 소요예산 : 약 2억 9천만 원 (봉사활동비, 연수비 등)

○ 봉사비 지급 기준

- 교육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식비,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가능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근무지내 출장 여비 기준 준용, 활동일에 따라 지급
4시간 미만: 일 10,000원, 4시간 이상: 일 20,000원

□ 지원 영역

연번	구분	사업명	횟수	사업내용
1	교과 활동 지원	기초학력 증진지원	주 1~5회	각 교과별 기초적, 기본적 요소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개별지도 (국어 사용 능력, 수리 능력 보완 등)
2		독서교육 활동지원	주 1~5회	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(방과후학교 수업 대기 시간 등 활용, 독서활동 지도,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)
3		학교생태 교육지원	주 1~2회	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지원 (생태교육 학습 자료 준비, 교재 생물원 조성 지원 등)
4	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	인성교육 지원	학교별 상이	학생의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 함양 및 심리·정서 결손 회복을 위한 개별 상담 진행 (선도처분 학생, 학교부적응학생 대상 갈맷길 동행 프로그램) ※참여한 학생에게는 참여시간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
5		다문화 교육지원	주 1~5회	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(다문화 이해교육, 한국어교실 운영, 다문화학생 외국어 학습 지원 * 다문화교육 행사 지원 등)
6		안전교육 지원	주 1~5회	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·체험활동·실습 시 학생 대상 안전 지도 (현장체험활동 지원, 실험실 안전 지도 등)
7		동아리 활동지원	주 1~3회	학생들의 발달 수준,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(예술체육 교육, 전래놀이 지도 등)
8		기타 교육과정 운영 지원	주 1~5회	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수시 지원 (학습준비물, 방과후 연계형 돌봄, 복도감독, 장애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** 등)